



## 공중위생영업자 주요 위반 사례

공중위생관리법	적발 사례	벌칙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미신고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숙박업자의 객실·침구 등의 청결사항 미실시 (객실 월 1회 이상 소독 미실시, 침구 미세탁 등)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숙박업자 및 목욕장업자의 업소 내 영업신고증, 요금표 미게시	
	목욕장업자의 목욕실 등 청결사항 미실시 (목욕실 월 1회 이상 소독 미실시, 욕수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미실시 등)	
	목욕장업자의 발한실 안전관리 사항 미실시 (온도계 비치, 주의사항 게시 등)	
	목욕장업자의 목욕실 등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는 행위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의 1회용 면도날 재사용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의 업소내 영업신고증, 면허증 원본, 최종지불요금표 미게시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의 3가지 이상의 서비스 내역서 사본 1개월간 미보관	
	미용업자의 유사의료행위	
미용업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행위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 무범위등	무면허 이용업 또는 미용업 행위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영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후 영업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약사법 주요 위반사례

약사법	위반 사례	벌칙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약사 면허증 대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3조(의약품 조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약사(한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한약사의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한 경우 (*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제 행위 제외)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조제를 거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의약품 변경·수정조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7조(대체조제)	의약품 대체조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조제한 약제의 용기·포장에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등을 적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
제30조(조제기록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
제44조(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특정질병의 전문약국이라고 환자에게 알리고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 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성인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업 예외지역)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고시한 품목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하는 경우(의약품업 예외지역)	
	비규격품 한약 판매 및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가능함을 암시 표시·광고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의약품 개봉 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0조(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1조(판매등의 금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의료법 주요 위반사례

의료법	위 반 사 례	벌 칙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면허 대여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진료 방해 행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 진단서 등	허위진단서, 증명서 작성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 누출·변조·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 누출·변조·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무면허의료행위(반영구화장, 부항 등)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3조 개설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없이 의료기관 개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특수의료장비(MRI, CT 등) '적합'판정없이 사용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무단 폐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6조 의료광의 금지 등	불법의료광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업무 정지기간 중 의료기관 개설·운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